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개별소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5년 12월 31일까지’에서 ‘2026년 2월 28일까지’로 2개월 연장하고,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.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‘2025년 12월 31일까지’에서 ‘2026년 6월 30일까지’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3조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탄력세율) ①법 제1조제 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 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의2(탄력세율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락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삭 제	
3의2.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 하는 물품: 킬로그램당 275원. 다만,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는 킬로그램당 247.5원으로 한다.	3의2. ----- -----. --- <u>2026년 2월 28일</u> ----- -----.
4. ~ 7. (생 락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삭 제	
③ · ④ (생 락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 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	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 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
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) 제2 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 3항의 개정규정은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) --- ----- ----- <u>2026년 6월 30일</u> -----.

제3조(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 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 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 일부터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 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 한다. ②·③ (생 략)	제3조(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6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